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69 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 박덕흠 • 박수민 • 강대식

강승규 • 박정하 • 이양수

백종헌 • 최은석 • 김민전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영상촬영기기의 휴대가 비교적 쉬 워 이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후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불법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. 따라서,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법촬영 후 유포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,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

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2항 중 "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"을 "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	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	②
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	
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
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	
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	
하 "반포등"이라 한다)한 자 또	
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	
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	
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	
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	
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	
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	
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	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	<u>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</u>
<u>이하의 벌금</u> 에 처한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